



제41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진료시 나이 제한 폐지 >

■ 강기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501호)

2024.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권 태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진료시 나이 제한 폐지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2. 7.
3. 회부일 : 2024. 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 개정안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¹⁾에 해당하는 순직군경 유족 등(이하 “선순위 유족”이라 함)이 나이에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국가유공자법」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 ⑤ (생략)

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략) ⑧ (생략)	----- ----- ----- ----- ----- -----. 4.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등 선순위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2)에 따라

-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②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료비용의 감면을 받을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명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한다.
1.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감면대상 1명을 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을 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선순위에 해당하는 요건 외에 나이가 75세 이상인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선순위 유족임에도 나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 감면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개정안은 7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선순위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선순위 유족이 나이에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순직군경, 특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순직의무군경 부모의 경우 75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료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2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는 국가유공자 본인임에도 위탁 병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의 경우의 위탁병원 의료지원도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대상자들로부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 고령화 및 다양한 의료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위탁병원 확충을 국정과제로 우선

⑥ 법 제42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추진 중으로 한정된 예산과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 나이 제한을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309억원(연평균 62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³⁾
- 기획재정부는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연령제한 폐지 등에 따른 재정소요에 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위탁병원의 과잉진료·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없이 의료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순직군경 유족 등 선순위 유족이 나이에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 6788-5112

3) 참고: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p.6)

참고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 '25~'29년 추가재정소요 : 309억 원(연평균 62억 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입원	대상인원(명, A)	18,999	20,519	22,160	23,933	25,848
	수진횟수(회, B)	3.5	3.5	3.5	3.5	3.5
	1인당 입원단가(원, C)	30,469	32,175	33,977	35,880	37,889
	입원 비용(백만원, D=A×B×C)	2,026	2,311	2,635	3,006	3,428
외래	대상인원(명, A)	18,999	20,519	22,160	23,933	25,848
	수진횟수(회, E)	4.9	4.9	4.9	4.9	4.9
	1인당 외래단가(원, F)	27,952	29,713	31,585	33,575	35,690
	외래 비용(백만원, G=A×E×F)	2,602	2,987	3,430	3,937	4,520
총 진료비용(백만원, H=D+G)		4,628	5,298	6,065	6,943	7,948

【추계 방법】

- 대상인원: 75세미만 선순위 유족 인원(2025년 기준)에 2021-2023년 평균증감률(8.0%) 적용
- 수진횟수: '22년 위탁병원 유족 평균 수진횟수(입원 3.5회, 외래 4.9회) 적용
- 단가: '22년 위탁병원 유족 입원 단가(25,874원)에 2020~2022년 평균증감률(5.6%) 적용
'22년 위탁병원 유족 외래 단가(23,271원)에 2020~2022년 평균증감률(6.3%) 적용